

장기화재보험의 담보여부

1. 사건개요

경북 영일에서 사료용 어분공장을 경영하는 K는 D사와 1982년 4월 보험금액 건물: 1천만원, 시설 및 기계공구류 비품일체: 4천만원, 보험기간: 1982년 4월 20~1987년 4월 20일(5년간) 등을 내용으로하여 장기화재보험 계약을 체결 하였다.

동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D사의 위 지방영업소장과 모집인이 수차례 K를 방문하면서 동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동 약관을 설명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시는 동 약관 제 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혹은 고의가 아닌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고 한다.

그후 1982. 6. 12. 15:00경 동 공장에서 원인을 정확히 알수 없는 소규모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2시간 정도의 자체 진화작업 후 불길이 잡혔고, 경찰서에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K는 이 사고로 동 공장의 주요 공정인 어분건조장치일부가 훼손되었으므로 동 훼손에 대한 보상을 D사에 요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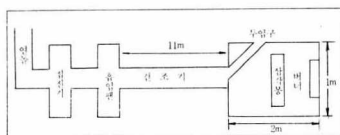
참고로 어분건조장치를 살펴보면(도표참조) 대략 가열로, 건조기, 흡입팬(fan), 집진기, 연돌 등으로 대별되고 가열로에서 경유 버너를 사용하여 열을 발산하면



이 혜 구
한국보험공사 조정과장

이 열이 흡입팬의 흡입 작용으로 건조기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연돌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게 설계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타 공정에서 썬 생선이 투입구로 투입되어 건조기 내부로 떨어진다. 건조기는 작동과 동시에 회전하게 되어 있고 가열로에서 들어온 열에 의하여 생선을 건조시키게 된다. 이때 흡입팬은 가열로의 열을 건조기 내부에 흡입하는 동시에 건조기 내부의 증발된 수분을 계속적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 사고는 결국 가열로의 열이 정상가동시보다 초과하여 건조기 내부에서 건조되면 어분에 착화함에 따라 전 건조장치가 과열되어 일어난 사고로 추측되었는 바



이 사고로 손상을 입은 부분은 건조기부터 연돌까지로 전반적 수선이 없이는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D사는 먼저 이 사고가 빛과 화염등을 수반한 화재가 실제로 있었던가와 그 불이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화재(unfriendly fire, hostile fire)인지 여부에 착안하여 이재조사를 필한 후, 동 사고는 불자리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우호화(friendly fire)에 해당되어 보험사고가 아니므로 약관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보험원리상 보상이 불가능하며 설사 비우호화라 하더라도 동 기계장치기능이 한계점에 와 있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누적적 손해에 해당되어 이번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없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하자 K는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면책함은 부당하며 과거에는 전혀 기능에 장애가 없었는데도 누적적손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동 건은 손해보험분쟁심의 위원회에 상정되었다.

2. 당사자 쟁점

민원인은 동 공장을 경영한 이후 한번도 건조장치가 가열됨이 없었고 이번 사고는 가열로의 열이 갑자기 높아져 건조기 내부에

서 건조되던 사료에 착화하여 건조기 전체가 불게 과열되었으며 연돌로 검붉은 연기가 치솟아 이웃집 사람들과 종업원들이 물로 진화작업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이 화재로 동 건조장치가 훼손되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치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D사는 훼손된 건조장치 자체가 그 성질상 가열로에서 연돌까지 전체가 하나의 연도구실을 하고 있으므로 동 공정과 같은 경우 버너의 불길이 직접 건조기내의 어분에 착화하여 어분이 타고 그로 인하여 건조기가 과열되는 현상이 수시로 발생 가능하며 조사시점의 손상내용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건조장치가 전체적으로 과열 및 부식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번 사고로 일어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어분건조라는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점화된 가열로의 불이 직접적으로 건조기에 들어가고 가열로로부터 연돌까지가 하나의 불자리(화상) 이므로 동 사고는 비우호화의 요건인 화상을 떠난 불이 아니며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화재의 요건 중 장소적 우연성이나 연소성도 결여된 것이므로 장기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와 관계없이 보상할 수 없는 사고이고, 설사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적적 손해인 자연소모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 678조(보험자의 면책사유)에 의거 면책이라고 주장하였다.

3. 판정요지

손해보험분쟁심의위원회는 피신청인 D사에 대하여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동 위원회는 이 사고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등의 각 기재내용을 검토한 후, 종업원과 이웃주민들이 진화작업을 한 사실등을 토대로 화재가 있었음과 누적적 손해인 자연소모라면 동 공정의 공장내 중요성으로 보아 이 사고전에 수선등이 없이는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 화재로 급격한 기능저하가 초래되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우호화인지 비우호화에 해당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가열로의 전면에서 내부로 버너의 불길을 분사하면 가열로가 가열되면서 그 내부에 고온의 열기가 형성되며 이 열기는 건조기 뒤에 위치한 흡입팬의 흡입작용으로 열이 건조기내부를 통과하면서 동 건조기의 내부에 투입된 어분을 건조시키게 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버너의 불길이 직접 건조기내부를 통과하거나 건조기에 투입되어 이 불에 의하여 어분건조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위 건조장치의 구조가 가열로안의 불길이 항상 건조기내부를 통과하거나 건조기내부로 투입되도록 되어 있다면 건조기내부에서 건조되고 있는 어분이 이 불길에 의하여 소실되어 버림으로써 위 건조장치는 건조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중략)…」 따라서 본건 화재는 가열로의 불이 건조기에 옮겨 붙어서 발생한 사고로서 예정된 불자리인 가열로를 이탈한 불, 즉 보험 사고인 화재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4. 후설

이 건은 결국 D사가 분쟁심의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1981. 10. 26 건조장치 훼손부분에 대하여 5백만 4천 7백 53원의 보험금을 K에게 지급하였다.

본건은 위 공정과 같이 건조장치 등 화기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된 공정을 사용하는 공정 물건에서 유사분쟁을 유발한 소지가 있는 사건으로 D사의 주장대로 건조장치 전체가 남아짐으로써 화재위험이 점점 높아져 결국 화재 손해인지 여부가 어렵게 되어 사고 입증책임이 있는 보험자도 덕적 위험도 배제할 수 없어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로 D사가 인용한 판례를 검토해 보자.

사안은 보일러에 물이 충분치 못하여 지나친 화력에 의해 증기보일러가 망가진 경우(McGraw V. Home Insurance Co. 93 Kan 482 144p)와 설탕공장의 종업원이 온도 조절 장치를 여는 일을 소홀히 하여 설탕이 과열로 못쓰게 된 건(Austin V. Drew, 4 Camp, 360 (1815))으로 양건 모두 불이 원래 예정된 스토브와 연통속에서만 일어난 것이고 그 고유한 장소를 벗어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본건과 유사한 이 판례들은 불이 화상을 떠났는가 아닌 가라는 사실문제로 보험금 지급 책임여부를 판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본건은 불자리를 떠난 불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았으며 외국의 판례는 불자리를 떠나지 아니한 불의 열기에 의하여 경제적 손실이 있었으므로 면책판시했다고 볼 수 있다. ☐